

|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
| 94~94p 번호 : 02 | 문제-본문 |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 |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 |
| | | 수정 사유 | 보기 수정 |
| 775~775p 부록 번호 : 32 | 해설 | ⑤ 고객에게 불리한 면책조항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최소한의 책임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4.26., 2000다37524 판결 일부 참조). | ⑤ 고객에게 불리한 면책조항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최소한의 책임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수정 사유 | 해설 수정 |
| 784~784p 부록 번호 : 49 | 해설 | ③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0.2.11., 99다49064). | ③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5.2.12., 2014다73237). |
| | | 수정 사유 | 해설 수정 |
| 794~794p 부록 번호 : 67 | 해설 | ④ 특정한 유형의 계약이 아닌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 ①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각자가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민법 제703조 이하 규정) ②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동법 제674조의2 이하 규정) ③ 상대방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동법 제655조 이하 규정) ⑤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정기금을 지급하는 계약(동법 제712조 이하 규정) | ④ 특정한 유형의 계약이 아닌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 ①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각자가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민법 제703조 이하 규정) ②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동법 제674조의2 이하 규정) ③ 상대방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동법 제655조 이하 규정) ⑤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정기금을 지급하는 계약(동법 제725조 이하 규정) |
| | | 수정 사유 | 해설 수정 |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